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0차 정무위원회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연대보증채무 부종성 인정 근거 신설 〉
■ 신장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910호)

2025. 11.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신장식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9. 11.
3. 회 부 일 : 2025. 9. 1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신용보증기금법」 및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신용보증기금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채권자인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회생 또는 파산·면책을 통해 채무를 조정받으면 동일한 비율로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도 감경 또는 면제되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재기를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농림수산업자에 대하여 유사한 보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 채권자인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어 중소기업인 농림수산업자가 어느 기관으로부터 신용보증을 받았는지에 따라 연대보증인의 부담의무가 달라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 채권자인 경우에도 회생 또는 파산·면책 시 주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의 부종성(附從性)을 인정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재기를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관별 연대보증인 간의 형평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6 신설).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채권자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기금”)인 경우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면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6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13조의6(연대보증채무의 감경·면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제2항, 제567조, 제62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기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 및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제2항¹⁾, 제567조²⁾ 및 제625조제3항³⁾은 회생, 파산·면책, 개인회생을 통하여 주채무가 감경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회생계획의 효력범위) ② 회생계획은 다음 각호의 권리 또는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2. 채무자 외의 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7조(보증인 등에 대한 효과)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③ 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또는 면제되는 경우 연대보증채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민법」상 보증채무의 부종성(附宗性)⁴⁾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 이러한 연대보증채무 부종성의 예외로 인하여 기업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조정을 받더라도 기업의 연대보증인(실제 경영자)은 여전히 고액의 보증채무 상환의무를 부담하게 되어 기업인의 재기를 어렵게 하는 문제가 있음⁵⁾.

○ 이에 중소기업진흥공단⁶⁾의 경우에는 2012년 12월,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경우에는 2013년 5월에 각각 법률 개정을 통해 채권자가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기금인 경우 주채무가 감경·면제 시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면제하도록 규정하여 연대보증채무의 부종성을 인정하였음.⁶⁾

4) 연대보증의 부종성은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는 원칙적으로 독자적인 존립목적이 없고 단지 주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므로 주채무에 부종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바,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되는 경우 부종성에 따라 보증채무도 감경 또는 면제됨. 그러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부종성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합헌결정을 내린바 있음(헌법재판소 결정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제3항 등 위헌확인 소송”, 2008. 10. 30. 2007헌마206)

5) 중소기업청·(사)벤처기업협회, “벤처기업 CEO의 연대보증 완화방안에 관한 연구”, 2009, p.265

6)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연대보증채무의 감경·면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제2항, 제567조, 제62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중소기업진흥공단인 경우(이 법 제66조제5항에 따라 대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에 한정한다)에는 중소기업·벤처기업이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 및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연대보증채무의 감경·면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제2항, 제567조, 제62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기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 및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연대보증채무의 감경·면제) 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제2항,

□ 그런데, 농신보기금의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어 중소기업인 농림수산업자가 어느 기관의 보증을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연대보증인의 부담의무가 달라질 수 있는바, 개정안은 농신보기금이 채권자인 경우에도 연대보증채무의 부종성을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중소기업 경영자의 재기 지원 및 신용보증기관별 연대보증인 간의 형평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연대보증채무의 부종성이 인정될 경우 농신보기금이 회수할 수 있는 채권규모 감소에 따라 농신보기금의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중소기업이 경영상의 어려움에 빠진 경우 경영자인 연대보증인이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보다 기업의 파산·면책 등을 통해 채무를 감면받으려는 도덕적해이(moral hazard)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입법정책적인 결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참고로, 농신보기금의 경우에는 2018년 4월 이후 신규·증액 신청 법인 기업에 대하여 연대보증이 면제됨에 따라, 2025년 현재에는 그 이전의 연대보증채무에 대해서만 연대보증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라 채무부담을 면제·경감받을 수 있는 연대보증인의 범위는 제한적⁷⁾일 것으로 보임.

제567조, 제62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기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 및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

7) 2018년 4월 이전 연대보증인 중 이 법 시행 이후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되는 연대보증채무부터 적용

개정안 부칙

제2조(연대보증채무 감경 또는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되는 연대보증채무부터 적용한다.

[표] 2024년말 기준 농신보기금 보증 및 연대보증 현황

(단위: 억원, 건)

구분	농어업법인 ¹⁾		그 외 법인(중소기업)		합계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법인보증 전체	12,803 (68.9%)	5,600 (69.2%)	5,775 (31.1%)	2,485 (30.8%)	18,578 (100.0%)	8,085 (100.0%)
연대보증 보유	6,670 (65.3%)	2,972 (66.9%)	3,540 (34.7%)	1,467 (33.1%)	10,210 (100.0%)	4,439 (100.0%)

주1) 농업회사법인, 어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자료: 금융위원회)

문 의 처

02)6788-5111